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화페제도의 발생발전과 그것을 저해한 일본침략자들의 책동

김 목

1. 서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적관계는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봉건사회의 래내에서 움 터 자라기 시작하였으나 외래자본의 침투로 인하여 정상적인 발전의 길을 걸을수 없었습니다.

일제는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나라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킨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살하고 파괴략탈하였습니다.》(《김정일전집》제4권 434폐지)

우리 나라 봉건사회태내에서 자라나고있던 자본주의적관계는 19세기 후반기에 들어 서면서 더욱 발전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17세기이후부터 상품화폐관계의 발전으로 상인자본이 장성하였으며 신용제도가 출현하여 발전되여왔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 리용된 신용형태들은 외획, 환, 어음이였다. 이것은 결국 금융의 발생발전을 보여준다.

19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자본주의화폐제도발전을 위한 사회경제적조건들이 성숙되였다.

론문은 19세기 후반기~20세기초 우리 나라에서의 자본주의화폐제도의 발생발전과정을 새롭게 해명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발생발전하기 시작하였던 자본주의적관계가 일본침략자들에 의하여 어떻게 억제되고 말살되였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서술하려고 한다.

2. 본론

2.1.19세기 후반기 자본주의화페제도수립을 위한 사회경제적조건의 성숙

우리 나라 봉건사회태내에서 자라나고있던 자본주의적관계는 19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발전하였으며 발전된 상품화폐관계에 기초하여 근대적인 자본주의화폐제도수립을 위한 경제적조건이 마련되였다.

자본주의화폐제도수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경제적조건은 공업분야에서 자본주의적기 업형태가 자라나고 전국적규모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상업자본과 산업자본의 축적이 추진 된것이였다.

19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공장제수공업이 상당한 정도로 발전하였으며 일부 생산령역은 기계제생산으로 이행하였다.

이미전에 자본주의적공장제수공업으로 경영되던 놋그릇제조업과 철가공업 및 금, 은, 동 광산업들은 그 경영규모가 더욱 커지게 되였다.

놋그릇제조업에서의 자본주의적관계는 19세기 6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저하게 발전하였다.

이 시기 정주의 납청에 큰 놋그릇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상을 경영하던 림씨성을 가진 상인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의 놋그릇점을 경영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운영하는 놋그릇점에 자금과 원료를 대주고 그 리익을 절반씩 나누어가지였다. 그는 놋그릇생산을 직접 지배하면서 고용로동자들을 착취하는 산업자본가인 동시에 소영업자들을 자기 자본에 예속시키고 그들의 놋그릇점들을 지점, 분점으로 전환시켜 상업리윤까지 독차지하는 상업자본가이기도 하였다.

당시 자본주의적방법으로 경영하는 놋그릇제조업은 경기도의 안성과 전라도의 구례, 전주, 황해도 재령군의 상방면일대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도 상당히 발전하였다.

여러가지 그릇을 만드는 각지의 놋그릇제조업자들은 서로 생산적 및 지역적련계를 맺고 생산을 전문화하면서 경쟁적으로 판로를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놋그릇생산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에 자본 주의적공장이 출현하였으며 1897년에 이르러서는 한성에 합자회사로서의 조선유기상회가 조직됨으로써 회사형식으로 된 자본의 결합도 이루어지게 되였다.

철가공업과 농기구생산, 면직물과 견직물생산부문에서도 자본주의적경영형태가 광범 히 나타났다.

1884년에 견직공업을 위한 회사들이 창설되고 자본가들에 의하여 직포공장이 세워졌으며 1899년에는 민간인자본가와 봉건관료들과의 합자형태로 된 한성방적고분회사가 조직되였다.

이 시기 우리 나라에서 금생산이 장성하였는데 19세기말에 자본주의적방법으로 경영되는 금광들이 늘어나 그 수는 169개에 달하였고 그가운데서 운영된것이 97개소였다.

1889년 부령금광에서는 봉건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주가 약 800여명의 로동자를 고용하여 금을 생산하였으며 회령에서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금광이 개인기업가들에 의하여 운영되고있었다.

영흥금광에서는 1885년에 약 2 000명의 광군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1890년초에는 약 4 000명으로 늘어나고 1885년이전에 평강의 금광들에서도 약 3 000명의 로동자들에 의하여 금이 생산되였으며 회양의 금광에서도 1897년경에 4 000여명의 로동자들이 일하였다.

1881~1884년에 원산, 인천, 부산 등 항구를 통하여 일본에 수출된 금의 총량이 금액상으로 188만원이였다면 1888년 한해에는 137만원에 이르렀다. 이것은 당시 금 1관(3.75kg)당 2 882원씩 하던 무역단가로 환산하면 년수출총량이 1881~1884년의 년평균수출량 163관(611.25kg)으로부터 1888년에는 475.3관(1 781.25kg)으로 급격히 늘어났다는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당시 일본침략자들의 강도적인 금략탈책동이 심화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나라에서 금생산량이 급격히 장성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 금생산량이 전례없이 늘어난것은 우리 나라에서도 자본주의화폐제도로 이

행하는것이 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 제기되였기때문이다.

19세기 후반기 서유럽자본주의나라들이 영국의 뒤를 따라 자본주의화폐제도의 기본 인 금본위제로 넘어가는것과 관련하여 제국주의렬강들은 식민지들에서의 금쟁탈전을 맹 렬히 벌리였으며 특히 일본침략자들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무시하고 피눈이 되여 금, 은을 대대적으로 략탈해갔다.

우리 나라에서는 금생산과 함께 은, 동, 철생산도 발전하였다.

19세기 후반기에 큰 은광수는 21개소였다. 당시 장진은광에는 100여명의 고용로동자들이 일하고있었는데 그들의 일부는 자본주의적으로 경영하는 개인광주에게 예속되여 일하였고 일부는 관영기업에 고용되여 일하였다.

놋그릇수공업이 발전하고 화폐주조가 자주 진행되는것과 함께 무기제조원료의 수요 가 높아짐에 따라 동생산이 더욱 늘어났다.

1900년을 전후하여 은률지방의 광산들에서는 7만t에 가까운 쇠돌이 생산되였으며 안악에서도 5만t의 쇠돌이 생산되였는데 그 생산량의 적지 않은 부분은 개인물주들에 의하여 생산된것이였다.

19세기 후반기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전에서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의 하나는 기계제공업이 발생발전하기 시작한것이였다.

19세기 50년대이후 광업부문에서는 미약하게나마 일정한 기계수단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당시 천공발파법에 의하여 대량적으로 채굴된 광석을 밀차로 운반하던것을 실례로 들수 있다.

광업부문에서 밀차의 도입은 당시 우리 나라의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단계로 볼 때 기계의 도입이 실현단계에 들어서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공장제수공업으로부터 기계제생산에로의 이행과정은 이전의 기술적성과와 새로운 자본주의적생산조직에 토대하여 발전하여온 놋그릇제조업, 야금업, 철가공업 그리고 그밖의 제지업, 요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의 기계의 부분적인 도입에 의하여 점차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883년 6월부터는 한성 중촌의 개인자본가들에 의하여 담배를 만드는 권연국, 술을 만드는 양춘국, 두부와 떡을 만드는 두병국 등이 설치되었으며 여기에서는 근대적인 기계기술을 받아들여 식료품들을 가공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조선봉건왕조안의 혁신관료들은 1883년 4월에 한성 삼청동 북창에 기기창을 설치하고 각종 절삭기, 압착기, 화학실험기구들을 받아들여 새로운 무기제작을 시도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는 근대적인 출판인쇄기관인 박문국을 설치하고 새로운 인쇄기술들을 도입하여 10월 1일부터 근대적인 신문인《한성순보》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19세기 후반기 특히 1880년대에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적관계가 공장제수공업으로부터 기계제생산에로 넘어가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과 함께 상품실현을 위한 시장형성도 추진되였다.

19세기 후반기에는 상업망이 확대되고 전국적규모에서 상품류통이 활발해졌다.

18세기말~19세기 초중엽에 이미 장시망이 발전하고 지역적시장권이 공고하게 형성 된데 기초하여 19세기 후반기에는 지역과 지역간 시장망들의 련계가 강화되면서 마침내 는 전국적인 규모에서 시장망이 형성되게 되였다. 국내시장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던 상품들은 모두 자본주의적수공업공장들에서 생산된 상품들이였으며 그 상품들은 대외무역거래의 대상으로도 되였다.

특히 각지 직포공장들에서 생산된 상품들은 점차 국내시장에서 가내수공업제품들을 밀어내고있었으며 개성유지제조업(개성절음)에서 생산된 각종 부채, 양산, 우산, 비옷, 종 이함, 담배쌈지를 비롯한 일용잡화들도 국내시장에서 많은 몫을 차지하고있었다.

이 사실은 19세기 후반기에 시장망이 전국적범위로 확대되고 자본주의적방법으로 경영되던 기업들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내시장에서 중요한 상품으로 류통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전국적규모로 되는 시장권의 형성은 19세기 후반기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필연 적산물이였다.

원래 공장제수공업은 전국적범위에서 시장의 출현을 요구하는것만큼 19세기 후반기에 자본주의적관계가 확대발전되고 기계제생산이 발전함에 따라 대량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실현문제가 일정에 오른 조건에서 그에 따르는 시장의 확대발전문제가 제기되지 않을수 없었다.

국내시장의 형성은 상업발전의 결과인 동시에 대내외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요인으로 되였으며 자본주의적관계의 확대발전을 촉진시킨 중요한 경제적공간으로 되였다.

19세기 후반기에 자본주의적공업이 급속히 발전하는것과 함께 전국적규모의 상품시장이 형성되여 신흥상업자본가, 산업자본가들의 수중에 화폐자본이 축적되여갔다. 특히국내상품류통령역의 확대와 대외무역의 급속한 발전과정을 통하여 막대한 화폐자본을 축적한 큰 상인들의 수가 훨씬 늘어났다.

국내외시장의 확대와 상품류통령역에서 이루어진 상인들의 적극적인 활동 및 상업자 본의 축적과정은 당시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적발전을 다그친 중요한 내적요인의 하나 였다.

19세기 후반기 상업 및 공업부문에서 마련된 화폐자본의 축적을 토대로 한 자본주의 적금융업의 발생발전은 그 전제조건을 이루는 자본주의화폐제도의 확립을 합법칙적요구로 제기하였다.

2.2. 자본주의화페제도의 발생발전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제도에 적응하는 화폐제도는 은본위제, 금은복본위제, 금본위제로 발전하였으며 이 제도는 구리돈을 기본으로 하는 봉건사회의 금속화폐제도와 구별된다.

19세기 후반기 우리 나라에서 상품화폐관계가 급속히 발전하고 국내외적으로 대량적 상품거래가 진행된 조건에서 상평통보를 기본으로 하는 금속화폐제도는 도저히 새로운 거래수요를 충족시킬수 없게 되였다.

당시 광업의 발전과 함께 13개의 도에서 운영된 금, 은 채굴업의 빠른 발전은 귀금 속생산과 저장의 넓은 전망을 열어주었으며 이것은 자본주의본위화제도에로 이행할수 있 는 현실적가능성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요구와 현실적가능성은 은본위제 또는 금본위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통 화제도에로의 이행이 당시 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 제기되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요구는 갑신정변때 민간에서 왕에게 올라온 상소문들에 국립은행, 화폐제도의 개혁, 금광과 기타 광산의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요구가 많이 반영되였다는데서도 뚜 렷이 나타나고있다.

이러한 요구와 추세를 외면할수 없게 된 조선봉건왕조는 자본주의화폐제도를 내오려 는 시도를 하지 않을수 없었다.

1886년 조선봉건왕조는 귀금속에 의한 근대적주화의 주조를 시도하였다.

이때 금화로서 20환, 10환, 5환, 2환, 1환, 은화로서 5량, 2량, 1량, 반량, 동화로서 20문, 10문, 5문, 2문, 1문 등 15종이 주조되였다.

새로 주조한 주화의 종류로 보면 금화를 본위화로 하고 은화, 동화를 보조주화로 하는 금본위제 또는 금화와 은화를 본위화로 하고 동화를 보조주화로 하는 복본위제에 해당하는 자본주의본위화제도인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때 주조된 주화들은 1884년 갑신정변과 상품화폐관계발전에 의하여 제기된 현실적요구에 따라 아무런 타산도 없이 시도한 시험주조품에 지나지 않는것으로 되였다.

조선봉건왕조가 자본주의본위화제도를 세우기 위한 아무런 물질적조건과 담보는 물론 법적규제조치도 갖추지 못한 조건에서 주조된 금화나 은화를 전면적으로 류통시킬수 있는 가능성은 처음부터 조성되지 못하였다. 뿐만아니라 당시에는 아직 금 또는 은과 자유래환할수 있는 래환은행권이 출현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은행권의 발행을 담당하는 발권은행도 창설되지 못하였다.

당시의 주화는 은행권에 대한 금, 은의 자유태환, 자유주조를 비롯한 본위화제실시를 위한 어떤 전제조건도 없었고 그의 류통을 위한 법적질서도 제정되지 못한 조건에서 나 온것으로 하여 자본주의본위화제도를 지향하는 시험주조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상품생산과 류통의 발전과 함께 근대적화폐제도에 대한 현실적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조선봉건왕조는 1891년에 《신식화폐조례》라는 법적규정을 발표하고 금속주화주조사업을 다시한번 시도하였다.

이때에는 1원의 은화, 10문과 5문의 동화가 주조되였으며 따라서 새 주화제도의 지향은 은화를 본위화로. 동화를 보조주화로 하는 은본위제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조선봉건왕조의 재정적기초는 헝클어져있었으며 자체의 태환은행권을 발행할수 있는 귀금속의 담보도 없었다. 또한 주조리익이 상평통보처럼 조성될수 없다고 타산하고있던 부패한 봉건통치배들에게는 이 제도를 지탱할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의욕도 없었으므로 이러한 시도는 곧 파탄되고말았다.

그러나 근대적화폐제도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긴박하게 제기되였으며 조선봉건왕조 안의 혁신세력은 갑오개혁을 통하여 이 요구를 실현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1894년 갑오개혁에서는 그 실현을 위한 한 고리로서 발표한 《신식화폐발행장정》에서 처음부터 은본위제라는것을 선포하면서 새로운 주화발행규정을 법적으로 제정하였다.

갑오개혁에 의한 은본위제는 자본주의화폐제도의 첫 단계에서 흔히 적용된 은본위제이며 이것은 본위화와 보조화와의 구별, 보조화가 가지는 강제통용력의 한도 등이 처음으로 규정됨으로써 봉건적화폐제도로부터 자본주의화폐제도로 넘어섰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리나 이 제도는 본위화만 규정하고 그와 태환할수 있는 은행권에 대한 규정이 없

는것을 비롯한 미숙성을 나타내고있었으며 더우기 외국화폐를 제한된 범위에서 조선화폐와 량, 소재, 가치가 같은것을 사용할수 있게 한다는 규정은 원래의 리치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당시 이미 조선봉건왕조내정에 상당한 정도로 간섭하고있던 일제를 비롯한 외래침략자들의 간섭책동이 이 규정에 영향을 미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시 이 제도는 비록 미숙성을 가지고있었다 하더라도 만약 그것을 자립적으로 더욱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갔더라면 자본주의화폐제도의 기초를 이룰수 있었으며 모든 자본주의나라에서 그러하였던것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조건이 성숙됨에 따라 금,은 복본위제를 거치거나 또는 그것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금본위제로 전진함으로써 전형적인 자본주의화폐제도로 이행될수 있었다. 여기에서 더욱 성숙시켜야 할 조건은 귀금속으로서의 금,은을 응당한 규모로 축적한 자체의 발권은행을 새로 창설하고 태환은행권을 발행하는것이였다.

그러나 갑오개혁의 한 고리로서의 《신식화폐발행장정》에 따라 수립된 화폐제도는 더욱 개선된것이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의 방해책동에 의하여 제대로 실현될수 없었다.

2.3. 우리 나라에서의 자본주의화페제도의 발생발전을 저해한 일본침략자들의 책동

일제는 우리 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뻗친 첫날부터 나라의 경제를 예속시키기 위하여 미쳐날뛰였으며 자본주의화폐제도의 발전을 백방으로 저해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자본주의화폐제도발전을 저해한 일제의 책동은 우선 민족은행들의 자주적인 발전을 가로막은데서 표현된다.

근대적본위화제도형성과 발전의 필수적전제조건의 하나는 발권은행을 거친 태환발권 제도를 세우는것이다.

조선봉건왕조는 혁신관료들의 영향밑에 갑오개혁을 계기로 하여 태환은행권발행제도 를 내오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호조의 이름으로 50량, 20량, 10량, 5량짜리 태환권을 발행한것도 이러한 시도의 하나였다.

갑오개혁때 호조를 탁지아문으로 개편하고 산하에 은행국을 설치하여 중앙발권은행창설을 시도하였으나 일본침략자들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실현되지 못하였다.

조선봉건왕조는 그후 창설된 민족은행들가운데서 중앙발권은행사업을 집행할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그 자리에 한국천일은행을 앉혀놓았다.

한국천일은행은 1899년에 조선봉건왕실을 배경으로 하여 주식회사형태로 창설되였으며 태환은행권의 발행, 조선봉건왕실재정의 출납, 국고금의 수납 등 특권을 받고 조선봉건왕조의 국고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므로 이 은행은 우리 나라에서 첫 발권은행으로 발전강화될수 있는 전망을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한국천일은행의 발전과 특권이 저들의 재정, 금융부문의 지배권장악에 방해로 된다는것을 타산한 일본침략자들은 조선봉건정부에 강요하여 이 은행의 모든 특권을 1902년에 제1은행에 넘기도록 획책하였으며 한국천일은행에 대한 금융적압력을 계속 가 하면서 그 운영을 방해하였다. 제1은행은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침입해들어온 일본주식은행의 한개 지점으로서 이 것이 얼마나 횡포성을 나타냈는가는 그들이 한국천일은행으로부터 은행권발행의 특권을 박탈한 후 곧 찍어낸 제1은행권에 한국금교, 주식회사 제1은행이라고 찍어넣은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실로 일본의 한개 사립상업은행의 지점에 불과한 제1은행이 저들이 빼앗아낸 리권이라는 허울밑에 우리 나라 정부의 금고로 자칭해나서고 그것을 조선봉건왕조에 강요하여한 나라의 은행권까지 강탈한것은 세계 어느 나라 침략력사에도 전례가 없는 강도적인행위였다.

제1은행을 비롯한 일본은행들의 압살책동과 자금봉쇄책동 등으로 하여 한국천일은행은 1906년에 자금난으로 파산의 운명을 면할수 없게 되였다.

이때 강제적인 《을사5조약》에 의하여 우리 나라를 날강도적으로, 비법적으로 타고앉아 조선의 정치경제생활전반을 틀어쥐고 좌지우지하고있던 일본침략자들의 《통감부》는 한국천일은행에 25만원이라는 푼전을 대부주는 교환조건으로 이 은행을 저들에게 예속시켜버렸다. 그리고 이 은행에 제놈들의 자본을 일부 밀어넣고 상업은행이란 간판을 갈아달아 완전히 예속시켰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생겨났던 발권은행은 발권을 변변히 해보지도 못하고 파괴되고말았다.

우리 나라에서의 자본주의화폐제도발전을 저해한 일제의 책동은 또한 자본주의화폐제도에로 이행하기 위한 선행조건을 이루는 동을 기본으로 하는 금속주화제도가 극심한 혼란상태에 빠져들어간데서도 나타났다.

당시 국가재정이 부족한것을 기화로 일본침략자들은 저들의 주화를 우리 나라에 밀어넣어 류통시켰으며 나아가서는 통화적지배권을 쟁탈하는 길에 들어섰다.

일본침략자들은 먼저 저들의 1원짜리 은화를 부산과 원산을 비롯한 개항장들에 대량 적으로 들이밀었다. 개항장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주화가 성행하자 이에 분격한 우리 인민 들은 한결같이 외국통화를 청산하고 근대적인 화폐제도를 세울것을 요구해나섰다.

이러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봉건통치배들은 《신식화폐조례》를 발표하여 은본위제형태의 본위화주조를 시도하였고 갑오개혁때에 혁신관료들은 《신식화폐발행장정》으로 은본위제를 선포하였으며 1901년에는 《신식화폐조례》에 기초하여 금본위제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어느 하나도 근대화폐제도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근대적화폐제도수립에 대해서 선포만 해놓고 지속적으로 실현되지 못한것은 당시 우리 나라의 금,은,동 귀금속을 일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침략자들이 대부분 강탈해가고있었기때문에 귀금속을 국가적으로 수매하여 자유태환의 밑천을 마련할수 없었기때문이다.

새로운 근대적화폐제도가 생명력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본위화를 법적으로 규정된 소재가치대로 주조하여야 한다. 본위화를 개개로 주조하는 경우에는 봉건통치배들에게 아무런 주조편차리익이 차례지지 않게 된다. 때문에 그들은 귀금속주화를 주조하는데 별로 흥미를 가질수 없었다.

당시 봉건통치배들이 주조편차리익을 얻을수 있은것은 보조주화들인 백동화, 적동화, 황동화들뿐이였다.

그런데 이 보조적주화들가운데서도 백동화는 소재가 얼마 되지 않으면서도 1894년 은본위제하에서는 상평통보의 25배, 1901년 금본위제하에서는 50배로 되였기때문에 적 은 소재가치로 가장 많은 명목가치를 조성할수 있었다.

자본주의본위화제도에서는 원래 보조주화의 주조량과 그의 강제류통한도가 거스름돈 보장에 알맞게 법적으로 규제되는것이 일반적관례인데 신식화폐조례에서는 이러한 요구 를 무시하고 오히려 보조주화인 백동화를 마구 찍어내는것을 합법화해놓았다.

이것은 일본침략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금본위제를 실현하려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것을 방해하면서 통화혼란을 격화시키려는 목적에서 교활하게 책동한것과 관련된다.

일본침략자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조선의 화폐제도는 력사상 전례없는 심각한 혼란에 빠져들어갔다.

그리하여 조선에서 자본주의본위화제도는 그것이 발생한 첫날부터 파괴되고말았으며 금본위, 은본위제도대신에 일본침략자들에 의한 식민지화폐제도가 부식되게 되였다.

2.4. 일본침략자들이 감행한 일본주화 및 일본제1은행권의 불법적강제류통

우리 나라에 기여든 일본침략자들은 위조주화를 마구 찍어내여 조선인민을 수탈하고 조선의 화폐제도를 혼란시켰을뿐아니라 제놈들의 못쓰게 된 주화들을 조선에서 강제류통 시키고 나아가서는 저들의 한개 주식은행에 지나지 않는 제1은행의 은행권까지도 강제류 통시킴으로써 조선의 화폐제도를 저들에게 예속시키는 길에 들어섰다.

1876년 《강화도조약》이 날조된 후 김기수라는 봉건관리가 수신사로 일본에 건너갔을 때 일본정부는 그에게 조선에서 일본의 통화를 류통시켜 조선자금을 매수하겠다는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조선의 화폐제도를 예속시키려는 일본침략자들의 책동은 무엇보다도 저들의 은화를 조선에서 강제류통시키는 불법행위에서 나타났다.

일본침략자들은 처음에 개항장과 일본인거류지를 중심으로 하여 일본은화와 그 보조화를 대량 류통시켰다. 당시 일본은화의 류통량은 약 200만~250만원에 달하였으며 그보조화는 20만~30만원정도였다.

1894년 청일전쟁과정에 일본침략군은 조선령토를 불법적으로 짓밟으면서 침략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조선인민의 재산을 략탈하고 경제를 황폐화시켰을뿐아니라 저들의 가치없는 통화를 마구 뿌림으로써 침략적군사비를 조선인민들에게 넘겨씌웠으며 조선의화폐제도를 혼란시켰다.

1897년 조선에 침입한 일본인상업회의소가 축소하여 드러내놓은 통계에 의하더라도 당시 조선에 뿌려지고 강제류통시킨 일본의 통화량은 300만~350만원에 달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에서 금, 은 등 귀금속을 모조리 략탈해가는것과 함께 가치없는 저들의 통화로 당시 가치높은 상평통보마저 모조리 걷어가서는 녹여 유기를 만드는 철면 피한 략탈행위까지 감행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1897년 금본위제도로 이행하면서 무효로 된 은화를 청산할 대신에 조선에서 계속 류통시켰다. 이리하여 일본화폐제도가 변경된지 5년이 지난 1902년에도 조선에서는 못쓰게 된 일본은화가 근 53만원이나 공공연히 류통되고있었다.

일제가 이처럼 은화의 불법류통을 조선에서 강요한것은 무효로 된 저들의 화폐를 조 선화폐제도에서 기본통화로 만들어서 그것을 대량 소유하고있던 일본침략자들의 리익을 담보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일제의 이러한 침략과 략탈책동에 분격한 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의 목소리에 눌린 조선봉건왕조는 1901년 2월 22일에 일본은화류통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본침략 자들은 그 금지령을 무시하고 계속 일본은화의 류통을 강박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에서 저들의 쓸데없게 된 은화를 강제류통시키기 위하여 영국침략자들과 결탁하였다. 이미 1891년에 조선에 기여들어와 봉건정부의 총세무사의 요직을 가로타고 앉아있던 영국의 브라운이란 놈은 일본침략자들이 저들의 폐화인 은화를 조선에서 법화로 강제류통시키려는 책동을 발벗고 도와나섰다.

일본통화를 배척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계속 힘있게 벌어졌다. 그러나 총세무사 브라운놈은 계속 일본은화를 해관세로 받아들이였다. 이러한 사태앞에 갈팡질팡하고있던 봉건통치배들은 1901년 7월 형식상의 일본은화통용금지령마저 해제하는 굴욕적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침략자들은 저들의 주화로 조선화폐제도의 자주성을 유린하며 나아가 서 그것을 예속화시키는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조선의 화폐제도를 예속시키려는 일본침략자들의 책동은 다음으로 일본의 제1은행으로 하여금 제1은행권을 대량람발하여 조선봉건왕조의 법화의 자리에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온갖 모략행위에서 나타났다.

일본침략자들은 이미 재정금융적지배와 략탈의 척후병으로 조선에 침입해들어와있던 제1은행 부산지점에서 1902년 5월부터 제1은행권을 발행하여 뿌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제1은행은 부산지점에서 1902년 5월 1원권을 발행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8월에는 5원권, 12월에는 10원권을 발행하여 불법적으로 류통시켰다.

일본침략자들이 조선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아무런 물질적, 가치적담보성도 없는 인쇄된 종이쪼각에 지나지 않는 제1은행권을 비법적으로 류통시키고 그것으로 조선인민들의 재부와 피땀의 열매를 모조리 략탈해가는 강도행위에 대하여 전체 조선인민들은 격분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그것을 반대배격하는 투쟁에 떨쳐나서게 되였다.

조선인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1903년 2월 당시 《황성신문》은 《그 한편의 무가치한 종이로 수천만원을 무제한 제조하여 우리 나라 전국에 광산, 철도와 토지, 가옥 과 금, 은, 동, 철과 쌀, 6축 등 각종 천산인조의 물건들을 빨아가져가고 다만 쓸데없는 종이쪽지를 남겨놓고갈뿐이다.》라고 규란하였다.

당시 광범한 인민대중과 언론계는 왜놈들의 은행권불법류통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였으며 일제의 경제적침략에 의하여 피해를 받고있던 상인들도 이를 반대하여 들고일어났다.

이러한 사태앞에 당황한 일본침략자들은 1903년 2월 저들의 군함까지 인천에 끌어들여 군사적위협으로 제1은행권의 류통금지령을 취소시킴으로써 저들의 야욕을 이루어보려고 획책하였다. 분노한 우리 인민들은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6월에는 모든 외국화폐를 배격하는 운동으로 넘어갔다.

일본침략자들은 1904년 6월에 조선봉건왕조에 강요하여 훈령이란것을 발표하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1901년에 봉건정부가 시도하다가 실현하지 못한 금본위제를 개정한다는 구실밑에 조선에서 류통되고있던 주화들을 모두 저들의 제1은행권으로 바꿀수 있다

는것을 박아넣었다. 이것은 일본침략자들이 조선에 침입시킨 일개 주식상업은행지점이 발행하는 제1은행권으로 조선의 통화제도를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완전히 틀어쥐려는 획 책에 따른것이였으며 식민지통화제도를 조작하려는 강도적야망을 로괄적으로 드러내놓 은것이였다.

이것은 또한 일제가 이미 통화금융령역에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드러내놓고 감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는것을 보여준다.

일본침략자들은 이렇듯 조선에서 저들의 주화, 은행권을 강제적으로 류통시켜 통화제 도를 혼란시킨 다음 수습한다는 미명하에 다시 제놈들의 통화로 조선의 통화제도를 완전 히 지배하는 식민지화폐제도를 세우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2.5. 일제에 의한 조선화페제도의 식민지적예속화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의 자주적이며 근대적인 화폐제도수립을 위한 지향과 모든 시도를 억제하거나 파탄시키고 화폐제도를 고의적으로 혼란속에 몰아넣은 다음 수습한다는 미명하에 조선봉건왕조에 강요하여 제놈들이 지배하는 식민지적화폐제도를 수립하였다.

일제가 조선에서 조작한 화폐제도의 식민지적예속성은 무엇보다먼저 화폐정리사업에 서 그대로 드러났다.

화폐정리사업은 당시 조선에서 류통되고있던 백동화를 비롯한 주화들을 걷어들여 제 1은행권을 기본으로 하는 일본의 통화와 바꾸어놓은 조작이며 제1은행권을 조선봉건왕조 의 법화로 규정하고 그것을 조선에서 무제한 강제류통시킬것을 강요한 조치였다.

화폐정리사업의 명목으로 일본침략자들이 강요한 식민지화폐제도부식에서 드러나고 있는 특징은 그것이 철저하게 조선의 화폐제도를 저들의 화폐제도에 예속시켜놓은데 있 으며 화폐정리사업이 조선인민의 화폐소득을 수탈하는 과정이였다는것이다.

화폐정리사업의 략탈성과 악랄성은 우선 일본의 모든 통화가 조선에서 법화로 류통 될수 있다는 계약을 조선봉건왕조에 강요한데서 표현되였다.

일제는 조선봉건왕조에 강요한 계약에 화폐정리와 함께 제1은행권은 한국법화로 강제류통력을 가지며 구화폐를 걷어들인 다음에는 제1은행권을 본위화폐의 대용으로 전면적으로 류통시킬수 있다는것을 반영하였으며 이른바 칙령 제3호라는데서 《1905년 2월 12일 〈칙령〉4호 화폐조례를 실시할 때 이 조례에서 규정한 화폐와 품위, 량목 및 형태가동일한 화폐는 어울러 지장없이 류통시켜 공사의 거래에 사용할것을 허용한다.》는 날강도적인 조항을 조작해내였다.

이것은 사실 일본침략자들의 통화가 우연히 조선봉건왕조의 주화와 형태, 무게 등에서 합치된것이 아니라 조선통화를 저들의 통화에 종속시키고 지배할 목적으로 조선봉건왕조에 강요하여 조선주화의 중량, 형태를 저들의것으로 맞추게 한것이였다.

일본침략자들이 은행권뿐아니라 저들의 모든 주화까지도 조선의 법화로 강요한것은 조선에서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해온 민족화폐제도를 완전히 말살하는 책동이였다.

일반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식민지나라와 화폐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환률을 저들의 식민지략탈정책에 유리하게 내려먹임으로써 식민지에 부등가교환을 강요하기 위한 공간으로 리용하여왔으며 이러한 예속적인 환자시세에 기초하여 대외무역과 국제결

제도 화폐적으로 예속시키고 지배하는것을 상투적수법으로 삼았다.

그러나 일본침략자들은 처음부터 조선의 민족화폐자체를 말살하는 책동을 감행했기때문에 놈들이 1945년 8월 조선에서 패망할 때까지 조선에서는 환률이라는것이 문제로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 이것은 일제가 조선에 부식한 식민지화폐제도가 처음부터 비할바 없는 예속성과 략탈성을 띠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화폐정리사업의 략탈성과 악랄성은 또한 백동화교환을 통해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일본침략자들은 화폐정리를 감행하는 과정에 백동화를 전부 극히 짧은 기간내에 걷어들이고 은행권 및 신화폐를 그와 교환한다고 선전하였지만 백동화교환에서 그 액면대로 한잎당 2전 5리로 평가한것이 아니라 실가대로 평가한다는 구실밑에 품위, 량목인상에 따라 정화만 제값대로 교환하고 그렇지 못한것은 1전으로 평가하거나 무효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일제는 먼저 서면으로 신청한 무데기금액에 한해서만 교환을 허용하였다. 그리다나니 조선사람들은 이 복잡한 수속절차를 몰라 교환에 참가하지 못하였을뿐아니라 교환하려 하여도 금액이 많지 못한탓으로 그에 응할수 없었으며 교환놀음에서 결국 제거되였다.

화폐의 교환과정에 일제는 제놈들이 보유하고있던 주화의 가치는 보존하고 조선사람들이 보유한 주화의 가치는 무효화하는 악랄하고 교활한 기만술책도 감행하였다.

화폐정리사업은 이렇듯 일제가 조선인민의 화폐소득을 야수적으로 수탈하는 과정이 였을뿐아니라 조선봉건정부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조선의 경제적명맥을 틀어쥐는 식민지 적지배과정으로 되였다.

일제가 조선에서 조작한 화폐제도의 식민지적예속성은 다음으로 놈들이 조선에서도 적용하게 되였다고 떠벌인 이른바 금본위제에서도 뚜렷이 드러났다.

원래 금본위제라고 할 때 그것은 류통령역에 금화와 자유태환을 담보하는 태환은행 권, 보조주화 등이 류통되면서 금화가 본위화로서 화폐류통의 기초를 이루는 통화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제가 조선에서 세웠다고 하는 금본위제는 태환은행권도 본위화도 일본의것이 대용되며 일본태환권을 금과 같은 자리에 앉혀놓은 예속적통화제도이며 발권량이 금보유량에 의하여 규제되는것이 아니라 일제의 지령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거짓금본위제에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또한 금 또는 금화의 자유태환이 빈 종이쪼각에 불과한 통화제도를 조작해놓고 그것을 금본위제로 위장한것이였다.

한g의 금이라도 닥치는대로 략탈해간 일제가 저들의 나라에서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주조하고있던 금화를 조선에 가져다가 은행권과 바꾸어준다는것은 도대체 있을수 없는 일이였으며 실지로 일제는 저들의 금화는 한잎도 조선에 가져다 류통시켜본 일이 없었다.

조선에서 일본침략자들이 조작해놓은 금본위제란 결국 제1은행권을 일본의 태환은행 권과 교환해주는 금본위제라는 뜻인데 이것은 순전히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았다.

일제는 1905년 1월에 저들이 제1은행 각 지점에 내려보낸 지시문에서 《신화폐를 발행하고 그 부족을 보충하여 본위화를 점차 주조할것이지만 당분간은 은행권으로 이에 충당할 방침이다.》라고 적어넣었다. 이것은 본위화를 주조할 의사는 없으며 은행권으로 금화를 대신하여 통화량을 채우겠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은것이였다.

제1은행이 조선에서 발행한 제1은행권을 일본의 태환은행권으로 바꾸어 일본에 가지고 건너가 일본은행에서 금과 바꿀수 있다는것을 골자로 하는 조선의 금본위제는 일제가 조선인민을 우롱한 기만술책이며 식민지적화폐제도의 정체를 가리워보려는데 지나지 않았다.

1909년말에 조선에서 람발된 제1은행권은 1 234만원에 달하였으며 일본은행권은 84만원이였다. 그리고 당시 제1은행권발행액의 87.5%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적담보도 없는 종이쪼각에 지나지 않는 일본국채, 일본은행권이였으며 발행보장의 12.5%인 귀금속준비액은 일제가 일본에 실어가기 위하여 조선인민들로부터 수탈해놓은 귀금속일뿐이였다.

이처럼 일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강점을 전후하여 통화, 재정, 금융령역에서 확고한 식민지적지배와 략탈을 실현하였으며 조선의 경제는 일제의 완전한 예속경제로 전락되게 되였다.

3. 결론

론문에서 서술한 사실과 자료들은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화폐제도의 발생발전을 저해 한 일본침략자들의 책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의 자본주의적관계가 저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는것은 우리 민족을 멸시하고 우리 나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부인하는 황당하고 그릇된 주장이다. 일제의 조선침략은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발전을 가져온것이 아니라오히려 그것을 백방으로 억제하고 말살하였다.

우리는 일제가 조선민족에게 끼친 죄악에 찬 과거침략력사에 대한 천백배의 사죄와 배상을 끝까지 받아내야 하며 높은 계급의식을 가지고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 위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경제제도를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화폐제도, 상품화폐관계, 주화